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염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.

발 의 자 : 염태영 · 백혜련 · 윤종균
조정식 · 이해식 · 박용갑
이연희 · 김영진 · 복기왕
신정훈 · 손명수 · 정일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,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 이에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철도

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영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07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)</p> <p>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9. · 10. (생략)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5조(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)</p> <p>①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할 수 있다.</u></p> <p>9. ·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